##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42 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 강준현·김수흥·박상혁

박영순 • 변재일 • 양향자

이해식 · 임호선 · 전용기

최혜영 · 홍기원 · 홍성국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, 점차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로서, 4개 박물관(도시건축박물관, 디자인박물관,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, 국가기록박물관)과 단지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와 그 연계시설(어린이체험관, 수장고 및 주차장)로 건설될 예정임.

통합운영지원센터는 2023년까지 1차로 건립하여 개관하는 시설로서, 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법적 근 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.

이에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, 국가

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,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함(안 제3조).
- 다. 지원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,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, 국립박물관단지 공동·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을 수행함(안 제6조).
- 라.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, 상임이사 2명 및 비상임으로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(안 제 7조).
- 마. 지원센터는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, 차입금, 운영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함(안 제13조).
- 바.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·연구를 위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
#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,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통합운영지원센터"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- 2. "연계시설"이란 수장고,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.
- 3. "수장고"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.
- 4. "어린이체험관"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법인격)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
- 제4조(설립) ①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목적
  - 2. 명칭
  - 3.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
  - 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  - 5. 공고의 방법
- 제5조(정관)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  - 1. 목적
  - 2. 명칭
  - 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  - 4. 자산에 관한 사항
  -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 -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- 7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  - 8. 회계에 관한 사항
  - 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  - 10. 조직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
  - 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- 12.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② 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장(이하 "건설청장"이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사업)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
- 2.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3. 국립박물관단지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- 4.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· 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
- 5.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
- 6.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
- 7. 국립박물관 및 관련시설의 보수 · 유지 · 관리에 관한 사무
- 8.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
- 9.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·협력체계 구축
- 10.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장에 관한 사항
- 1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관련시설 및 박물관이 수 행할 수 있는 사업
- 12.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 익사업
- 13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

사항

- 14.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
-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7조(임직원) ①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, 상임이사 2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 -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,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8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- 제9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④ 감사는 지원센터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-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5조제2항·제 3항,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·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- 제11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 ①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 - ②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- 제12조(이사회) ① 지원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.
  -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 -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,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

-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.
- 제13조(재원) ①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- 1.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  - 2. 국내·외 기관·단체·개인·법인 등의 찬조금·기부금 또는 후 원금
  - 3. 제15조에 따른 차입금
  - 4.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
  - 5. 그 밖의 수입금
  -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  -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

- 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) ①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- ②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·제출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회계법인을 포함한다)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수입·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차입금)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- 제16조(후원회) ① 지원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지원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.
  -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.

-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박물관자료의 위탁·관리) ①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·연구를 위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지원센터가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자료제공의 요청)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·교육기관·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·복사·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9조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)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, 교육기관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,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

- 려면 지원센터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・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20조(감독) ①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
  - ②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.
- 제21조(비밀엄수 의무)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2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23조(「민법」의 준용)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- 제25조(벌칙)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.
- 제2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18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사람
  - 2.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
  - 3.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지원센터의 설립준비) ① 건설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이내에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원센터 설립위원회(이하 "설립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 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 이 경우

- 위원장과 위원은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② 설립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건설청장이 임명한다.
-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한다.
-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⑥ 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건설청장이 부담한다.
- ⑦ 건설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3조(물품의 무상양도)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(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설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 장의 의견을 듣고,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4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속한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
- 제5조(직원임용의 특례) ①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 용된 것으로 본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,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  -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「국가공무 원법」상의 정년에 따른다. 다만,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이 「국가공 무원법」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을 따 른다.
- 제6조(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) 지원센터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.